국립고궁박물관 청년인턴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

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청년인턴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28일 국립고궁박물관장

□ 최종 합격자 명단 * 괄호 안은 핸드폰 뒷번호

응시분야(근무형태)	고용형태	응시번호	합격자
 건축	#114.OLE	5	배○○(5444)
행정	청년인턴	10	0 ○○(2605)

^{*}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채용계약 체결 후 퇴직 발생 시 예비 합격자를 선발 함.

□ 임용일

ㅇ 임용일: 2023. 5. 1.(월)

*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

□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안내

ㅇ 제출기한: 2023. 5. 2.(화)

ㅇ 제출장소: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

ㅇ 제출서류

-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(서식 1)

- 반명함 사진 이미지 파일(jpg) * 이미지 파일이 없는 경우 사진 3매 제출

□ 공지사항

- o 합격통보 후에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,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☎ 02-3701-7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채용서류 반환 안내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3년 10월 24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〈붙임3〉 서식의 반환청구서를 방문, 팩스(02-732-0775)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이 확인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거나 방문 시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.
-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10월 24일까지 보관하게 되며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 처리 할 예정입니다.

- 붙임 1.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.
 - 2.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. 끝.

서식 1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9호 서식]

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]에	√ 표시를 합니다.							
		기관명	채용방법 채용		직위(직급)				
채용기관		채용사유							
채용대상자 (확인인)		성명	주소						
		연락처	생년월일 채용 예		정일				
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									
① 가족채용	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?		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				
			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					
② 예외 해당 여부	①에서 "예"에 답변한 경우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?			[] 예 [] 아니오					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채용대상자(확인인)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① "가족채용"의 가족은 「민법」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- 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.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서식 2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	접수일자				
청구인	성명		수험번호				
주 소					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					
반환청구서류							
	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반환을 청구합니다.	제11조 및 같은 '	법 시행령 제23	도 및 제4조에	따라	위오	ት 같
					년	월	일
		청구인		()	너명 .	또는	인)
oo 사업장 구	시 하						

공지사항

- 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2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